

창의융합교육센터 운영규정

제정 2024.05.30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혜전대학교 창의융합교육센터(이하“센터”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

-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- 창의 융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 - 사업화 연계기술(R&BD) 개발 지원
 - 센터 교육시설 구축 및 관리
 - 센터 기자재 관리 및 운영
 - 창의 융합 교육 관련 유관기관 및 산업체와의 교류 협력
 - 기타 센터의 목적과 관계된 지원 사항

제3조 (조직)

- 센터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업단의 하위 기구로 둔다.
- 센터의 목적과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직을 구성한다.
 -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센터의 운영과 시설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.
 - 센터장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전문대학 사업단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 - 센터에는 교육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4조 (운영)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5조 (준용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계 법령 및 혜전대학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(2024.05.30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